

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
성명		주민등록번호			
주소					
연락처					
채권매입금액	금 원정 (₩)				
채 권매입구분 (해당란에 [√]표)	[] 일괄매입		[] 분할매입		
분할매입 시의 분할매입 금액	1.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: 금 원정 (₩) 2. 잔금납부 전: 금 원정 (₩)				
사업주체		사업지구			
주택명		동/호수			
채권보유 여부 (해당란에 [√]표)	[] 즉시매도	시장가격으로 대행증권사에 매도			
	[] 채권보유	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 또는 위탁계좌 개설 후 입고			
		증권사		증권계좌번호	

「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 작성 및 채권매입 시 주의사항 >

-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, 만원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.
-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채권을 분할매입하려는 경우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과 채권매입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.
- 채권의 실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